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12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1. 6. 23. 개정, 2021. 12. 23. 시행)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현행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수 수 료(제7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주무부서(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8. 10. ~ 8. 30.)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재무국 세무과 전종환(☎2133-344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 단위 | 금 액 |
|-------------------------------|-------|------|
| 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 1GB마다 | 8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 개 정 안 | | |
|---|---------------------|--------|--|--|--|
|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ㆍ 복제물 | | |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 · 복제물 | | |
|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 단위 | 금액 |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 | |
| 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 1건(700MB기준) 마다 | 5,000원 |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1GB마다 800원 | | |
| | 700MB 초과 시 350MB | 2,500원 | 복제(매체비용 별도) | |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써 정보이용을 청구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받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23.6.23.개정, 2023.12.23. 시행) 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상위 법령 의 징수 기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이용자로부터 조례에 의거한 수수료를 징수 지방세외수입 확충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종환(02-2133-3440)